참고자료 2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적용 기준

❍ 근거 : 2016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심사 기준표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2384, 2015.05.04.)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증명
- 건강보험 납입금(최근 10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단,'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입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도 확인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15년 기준, 단위 : (원))

분위 구분(경계값)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분위(P10)	17,500,440	1,458,370	44,558	22,541	45,145
2분위(P20)	26,691,861	2,224,322	68,276	58,698	69,151
3분위(P30)	33,956,889	2,829,741	86,666	86,291	87,731
4분위(P40)	40,352,541	3,362,712	102,078	108,758	103,233
5분위(P50)	46,498,152	3,874,846	118,139	130,183	119,751
6분위(P60)	53,265,477	4,438,790	133,489	147,619	135,442
7분위(P70)	60,812,502	5,067,709	153,998	170,102	156,506
8분위(P80)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9분위(P90)	89,037,804	7,419,817	226,818	245,357	235,011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2014년 기준, 단위 : (원))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연간)*
1분위	1,363,681	136,368,100	92,730
2분위	2,126,651	212,665,100	161,390
3분위	2,713,007	271,300,700	226,950
4분위	3,237,033	323,703,300	305,550
5분위	3,721,939	372,193,900	378,290
6분위	4,236,299	423,629,900	455,440
7분위	4,891,641	489,164,100	553,740
8분위	5,775,915	577,591,500	756,220
9분위	7,271,266	727,126,600	1,115,100

※ 타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여 제출서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증명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조치할 것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총재산세(주택 기준) = 기본재산세+도시계획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